연구대상자 동의 면제 사유서

신청일		2021	년	7 월	28	일			
접수번호	S2021-1917-0001								
과제명	간이식 후 간이식 절편 소실에 대한 위험인자 분석								
연구책임자	소속	소아청소년전문과	직위	부교	수	성명	오석희		

다음 중 하나의 범주가 모두 '예'인 경우 동의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.								
범주	<u>•</u> 1.	다음이 모두 '예'인 경우에만 동의면제가 가능함	예	아니오				
	1)	연구에서 예상되는 위험이 Level। 위험보다 크지 않음	V	_				
/	2)	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됨	V					
	3)	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,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음	V					
	4)	동의면제가 대상자의 권리나 복지를 침해하지 않음	V					
	5)	대상자가 연구 참여 후에 필요에 따라 연구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마련된 연구임	V					
	6)	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연구대상자를 포함하지 않음 (해당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경우, 대리인 동의 필수)	>					
\	7)	의약품/의료기기 허가용 연구(체외진단의료기기,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연구 제외)에 해당되지 않으며, 국외의 규제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는 연구가 아 님	>					
범주	예	아니오						
	1)	의약품/의료기기 허가용 연구(체외진단의료기기,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연구 제외)에 해당되지 않으며, 국외의 규제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는 연구가 아 님	V					
	2)	국가, 지방단체나 정부의 승인 또는 주도하에 수행되는 다음 중 하나 이상 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시범사업						
	1	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또는 시범사업		V				
	2	이러한 프로그램 하에서 이익을 얻거나 서비스를 받는 절차에 대한 연구 또는 시범사업		V				
	3	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절차에 대한 변경이나 대체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또 는 시범사업						

④ 이러한 프로그램 하에서 얻게 되는 이익이나 받게 되는 서비스에 대한 대 가 지불의 방법이나 수준의 변경에 대한 연구 또는 시범사업

항목에 표시한 후 자세한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